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5
----------	-----

제출일자:2010.04.01

제 출 자: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준칙(안)에 의한 자치구 조례의 개정요구와 상위규정 변경과 관련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차량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관요금을 인하하고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과 다동이 자녀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마을버스의 사업용차량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관 발행

- 제1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3호 개정

- 별표1 [비고] 제16호 신설

“③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마을버스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관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정기관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관을 발행 할 수 있다.”

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제15조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과 인용조항 변경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및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 제15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

- 제15조의4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

- 별지 제7호 내지 9호 신설

라.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별표1)

- 별표1 [비고] 제10호 개정

“10.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하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1급지는 적용제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0퍼센트 할인 및 우선배정 할 수 있다)”

- 별표1 [비고] 제15호 신설

“15.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3.3~3.22)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등의”를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마을버스의”로, “1년”을 “2년”으로, “별표1의”를 “별표 1의 5급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제9조”는 “제21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제9조”는 “제21조”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4(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②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곳
-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서 “20%”를 “30퍼센트”로 하고,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조 중 제1항 별표 1 [비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제2조 중 제1항 별표 1 [비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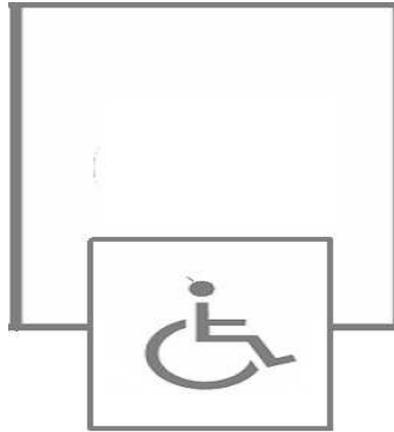
별지 제7호부터 제9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제15조의3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70cm × 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cm × 세로 42cm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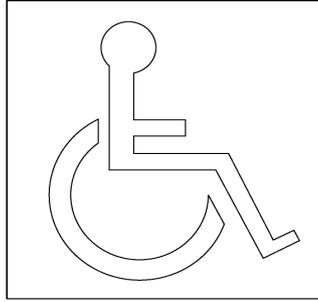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위 그림과 같이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서 표기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제15조3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가로 70cm × 세로 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cm × 세로 42cm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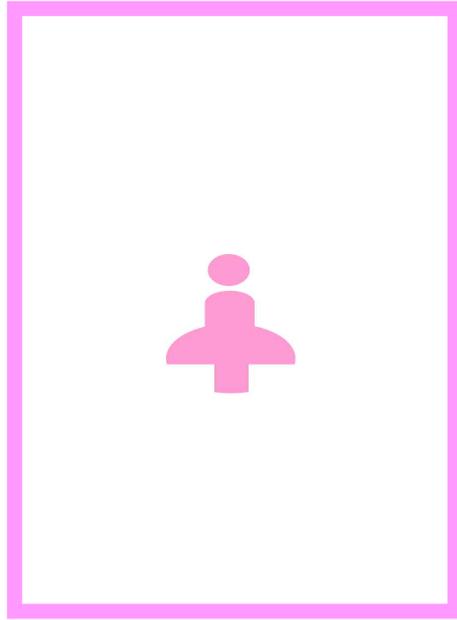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0cm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15조의4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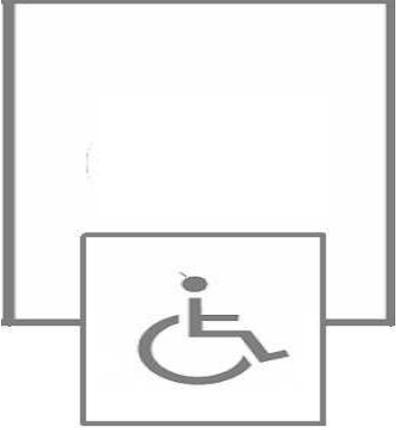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③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등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1년</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u>별표1</u>의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0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③----- <u>마을버스의</u> ----- ----- ----- <u>2년</u> ----- ----- ----- <u>별표 1의 5급지</u> ----- ----- -----.</p>
<p>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u>제9조</u>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② (생략)</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u>제9조</u>의 규정에 의하여 감</p>	<p>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9조제2항----- ----- ----- <u>제21조</u> -----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3. -----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9조제2항----- ----- ----- <u>제21조</u> -----</p>

현행	개정안
<p>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p> <p>4. (현행과 같음)</p> <p>제15조3(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설치기준 등)</p> <p>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li> <li>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li> <li>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li> </ol> <p>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li> <li>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li> </ol> <p>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li> </ol>

현행	개정안
<p data-bbox="662 376 782 414">&lt;신설&gt;</p>	<p data-bbox="801 324 1426 414">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p> <p data-bbox="801 474 1426 564">제15조4(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 data-bbox="801 584 1426 837">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p> <p data-bbox="801 857 1426 1055">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data-bbox="801 1075 1426 1541"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01 1075 1426 1113">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li> <li data-bbox="801 1133 1426 1272">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li> <li data-bbox="801 1292 1426 1382">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li> <li data-bbox="801 1402 1426 1541">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li> </ol> <p data-bbox="801 1561 1426 1758">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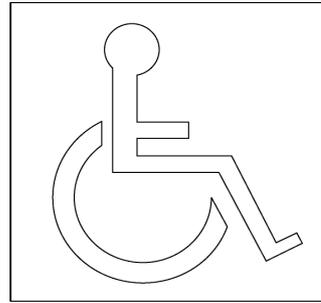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 data-bbox="671 331 1050 367">&lt;신설&gt; [별지 제7호서식]</p> <div data-bbox="807 443 1401 192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data-bbox="932 450 1262 539" style="text-align: center;"><b>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제15조의3 제3항관련)</b></p>  <p data-bbox="1038 1061 1166 1095" style="text-align: center;"><b>출입통로</b></p> <p data-bbox="831 1149 975 1182"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ol data-bbox="831 1200 1398 1906"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표지판 : 70cm × 60cm</li> <li>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cm × 세로 42cm</li> </ul> </li> <li>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li> </ul> </li> <li>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li> </ul> </li> <li>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그림과 같이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서 표기한다.</li> </ul> </li> </ol> </div>

현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  
(제15조의3 제4항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가로 70cm × 세로 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cm × 세로 42cm

2.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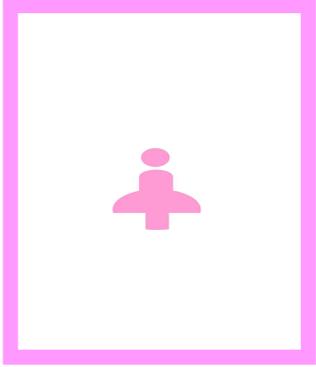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 위치는 지면에 표지판까지 높이는 150cm로 한다.

현행	개정안
	<p data-bbox="804 331 1050 360">[별지 제9호서식]</p> <div data-bbox="807 387 1401 190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data-bbox="847 412 1350 450"><b>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15조4관련)</b></p> <div data-bbox="946 562 1262 929" style="text-align: center;">  </div> <p data-bbox="1038 965 1169 994"><b>출입통로</b></p> <p data-bbox="836 1106 979 1135">-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36 1155 1374 1552">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5.1m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li> <li data-bbox="836 1570 1358 1711">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 (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li> <li data-bbox="836 1729 1374 1870">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li> </ol> </div>